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규정

제정 2009. 04. 27.

개정 2015. 04. 07.

개정 2015. 12. 08.

제 1 장 총칙

제1조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본 대학원” 이라고 한다)의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전형” 이라 함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입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말한다.
2. “특별전형” 이라 함은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입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말한다.
3. “입학전형위원회” 라 함은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 시행하기 위하여 학칙(안) 제3장에 의하여 설치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4. “공정입시관리위원회” 라 함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공정한 입시관리를 위하여 학칙(안) 제3장에 의하여 설치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5. “적성시험” 이라 함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및 제24조 제1항에 따라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질에 관한 적성을 측정하기 위해 시행되는 시험을 말한다.

제 2 장 입학전형의 절차

제3조 (신입생 모집방법) ①본 대학원의 신입생 모집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의 방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신입생 모집 절차는 입학전형 공고, 지원서 접수, 심사, 합격자 선정 및 발표, 등록의 순으로 한다.

③서울대학교의 총장은 늦어도 입학지원서 교부 및 접수일 3월 전까지 모집정원, 지원자격, 선발기준 등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세부적인 사항은 본 대학원의 장(長)이 같은 방식으로 공고할 수 있다.[개정 2015.4.7.]

제4조 (신입생 모집정원) ①본 대학원은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의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신입생 모집정원을 결정한다.

②전항의 모집정원 중 매해 6% 이상은 특별전형에 의한 입학생으로 한다.

제5조 (지원자격) ①본 대학원에 지원하는 자는 국내외에서 정규의 학사과정을 수료하고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본 대학원의 정규학기가 시작되기 이전에 위 요건을 갖출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자도 지원할 수 있다.

②특별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 이외에,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구체적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특수교육대상자
2. 가계형편이 어려운 자
3. 국가유공자이면서 신체장애가 있는 자
4. 그밖에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한 자

③ 입학전형위원회는 적성시험점수의 하한 등 별도의 지원자격을 정할 수 있다.

제6조 (선발기준) ①본 대학원은 입학지원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학사학위 과정에서의 성적을 포함한 학업성적
2. 적성시험 성적
3. 외국어 능력
4.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
5. 그밖에 자기소개 및 경력계획 등 입학전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본 대학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학지원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논술고사 또는 면접·구술고사 (또는 논술고사 및 면접·구술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 이를 입학전형의 평가지표로 사용할 수 없다.

③본 대학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시에 학교 교육목표와 특성화목표를 고려하여 입학지원자를 평가할 수 있다.

④그 밖의 선발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7조 (선발의 방식) ①본 대학원의 입학지원자에 대한 심사 및 선발은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②본 대학원은 제6조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한 성적을 받은 자를 일반전형 지원자 및 특별전형 지원자의 합격정원 중 각 50% 범위 내에서 우선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최종 합격되기 위하여 제6조 제2항에 따른 평가에서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할 것을 요건으로 할 수 있다.

③본 대학원은 제6조의 기준에 따른 평가를 마친 후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최종합격

자 명단 및 예비합격자 명단을 발표한다.

④입학전형위원회는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최종합격자 전체 (일반전형 합격자와 특별전형 합격자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음) 중에서 법학 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2. 최종합격자 전체 중에서 서울대학교 이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⑤본 대학원은 제4조의 모집정원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에 달하지 않는 인원만을 최종 합격자로 발표할 수 있다.

제8조 (제출서류와 전형료) ①본 대학원은 입학지원자에게 입학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본 대학원은 입학지원자로부터 소정의 전형료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입학전형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그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와 전형료, 수수료는 그 일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 (합격자 등록 및 추가합격) ①최종합격자가 신입생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일정기간까지 신입생 입학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한다.

②본 대학원은 제1항의 경우에 예비합격자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발표할 수 있다

제 3 장 입학전형위원회

제10조 (설치)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 시행하기 위하여 본 대학원에 입학전형위원회를 둔다.

제11조 (구성) ①입학전형위원회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을 둔다.

②본 대학원의 교무부원장은 입학전형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입학전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되, 제1, 2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서울대학교 입학관리본부장이 추천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소속이 아닌 서울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2인
2. 입학전형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본 대학원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 2인
3. 기타 입학전형에 필요한 소양을 갖춘 서울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

④본 대학원장은 매년 입학전형이 공고되기 이전에 입학전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입학지원자와 친족, 호주, 가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직무 집행에서 제척된다.

⑥입학전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자에게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본 대학원의 장(長)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 서기 등) ①입학전형위원회에는 간사, 서기와 입학전형관리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입학전형위원회의 간사, 서기 및 참여직원은 서울대학교의 직원 중에서 본 대학원의 장(長)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입학전형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서기 및 참여직원은 간사를 보조한다.

④ 제11조 제5항의 규정은 간사, 서기 및 참여직원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3조 (입학전형위원회의 직무) 입학전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지원자격 및 입학정원에 관한 사항
2. 선발기준에 관한 사항
3. 논술고사 및 면접·구술고사에 관한 사항
4. 입학지원자 평가, 점수계산 및 성적 사정에 관한 사항
5. 입학전형의 공고에 관한 사항
6. 입학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입학관련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8. 입학관련 정보 전산망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9. 입학지원자의 부정행위 제재에 관한 사항
10. 입시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11. 기타 학생선발, 입학 및 등록에 관련된 사항

제14조 (논술고사 및 면접·구술고사의 시행) ①입학전형위원회는 논술고사 및 면접·구술고사의 실시여부와 그 구체적 방식을 결정한다.

②논술고사가 시행되는 때에 본 대학원의 장(長)은 서울대학교의 교원 또는 서울대학교 입학관리본부에게 논술문제의 출제 및 채점을 의뢰한다.

③면접·구술고사가 시행되는 때에 본 대학원의 장(長)은 본 대학원의 교원을 면접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기타 논술고사 및 면접·구술고사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입학전형위원회가 정한다.

- 제15조 (회의) ①입학전형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위원장 또는 위원은 자신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④전항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⑤입학전형위원회의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⑥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보수) 입학전형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간사, 서기 및 참여직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공정한 입시관리와 사후감사

- 제17조 (부정행위자의 제재) ①입학지원서 및 제출서류의 허위 기재, 서류의 위·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합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 그러한 입학지원자는 불합격 처리되고, 이미 합격 또는 등록되었어도 이를 취소한다.
- ②제1항의 경우에 본 대학원은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부정행위자의 향후 본 대학원 지원 자격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본 대학원에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다.
- ④공정입시관리위원회는 제3항의 이의가 이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입학전형위원회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⑤본 대학원은 공정입시관리위원회가 제3항의 이의가 이유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 ⑥본 대학원은 제3항의 이의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공정입시관리위원회의 설치) 본 대학원의 공정한 입시관리를 위하여 본 대학원에 공정입시관리위원회를 둔다.

- 제19조 (공정입시관리위원회의 구성) ①공정입시관리위원회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을 둔다.
-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공정입시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본 대학원의 장(長)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서울대학교 입학관리본부장이 추천하는 본 대학원 소속이 아닌 서울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 2인
2. 기타 공정한 입시관리에 필요한 소양을 갖춘 서울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
- ④공정입시관리위원회 위원은 입학전형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공정입시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자에게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본 대학원의 장(長)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 ⑥공정입시관리위원회에는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다.
- ⑦제11조 제5항의 규정은 공정입시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간사와 서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0조 (공정입시관리위원회의 직무) 공정입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부정행위자 제재에 대한 이의신청
2. 입학지원자의 불합격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3. 본 대학원 입학전형의 사후감사에 관한 사항

제21조 (공정입시관리위원회의 회의) ①공정입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공정입시관리위원회의 회의는 특별한 조항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공정입시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자신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④전항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재적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⑤공정입시관리위원회의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⑥공정입시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 (성적의 공개) 본 대학원의 입학지원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대학원에 본인의 성적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 (불합격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①본 대학원의 입학지원자로서 이 규정 제7조 제3항에 의한 최종합격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본 대학원에 서면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불복신청자가 추가합격자로 발표된 경우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②공정입시관리위원회는 불복신청이 이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입학전형위원회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본 대학원은 공정입시관리위원회가 입학전형과정에서의 인적오류와 편견으로 인해 합격여부가 바뀌었다고 판단한 때에는 최종합격자 명단 또는 예비합격자 명단을 변경할 수 있다.

④본 대학원은 불복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사후감사) ①공정입시관리위원회는 입학전형 업무의 적절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학전형 업무수행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공정입시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감사를 위하여 입학전형위원회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공정입시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감사를 마친 후 입학전형의 관리에 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본 대학원의 장(長)과 입학전형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본 대학원은 전항에 따른 평가 및 개선방안을 향후 입학전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 (보수)

공정입시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간사 및 서기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5 장 기타

제26조 (비밀유지의무) ①입학전형위원회의 위원, 간사, 서기 및 직원, 공정입시관리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 그밖에 입학전형이나 공정입시관리에 관계된 자는 그 직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그 비밀을 진술할 의무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의무는 그 직무수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제27조 (규정의 변경 등) ①이 규정은 본 대학원 교수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4. 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2. 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